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6. 2.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6월 14일 박성준의원 등 13인

나. 회부일자: 2024년 6월 17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2024. 7. 16.)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 8. 22.) 상정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 9. 22.)

상정, 축조심사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 11. 18.)

상정, 축조심사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 1. 7.)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2026. 1. 7.)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박성준의원)

현행법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50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저출생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지급되고 있는 10만원의 아동수당으로는 아동 양육 부담을 감경시기에 한계가 있으며, 8세 이상 18세 미만의 학령기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경우 교육비 등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큰 상황에서 영·유아 위주의 아동수당 지급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아동수당을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의 연령인 18세 미만까지 지급하고 그 금액 또한 50만원으로 상향하여 지급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경윤)

현재의 제도로는 아동수당의 지급대상 범위가 미취학아동인 만 8세 미만으로 한정됨에 따라 아동수당의 다양한 정책적 효과를 온전히 기대하기 어렵고, 그 지급 금액도 제도적으로 물가연동 등을 통해 주기

적인 금액 조정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고정되어 있어 매년 실질 가치가 하락되고 있기도 함. 더구나 아동 양육비는 아동이 성장하면서 증가하고 있는 등 추가적인 양육부담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도 지목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개정안과 같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확대하고, 지급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경우 양육부담 경감이라는 제도의 본래 취지를 제고할 수 있고, 인구 위기 극복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아동수당 지급연령 확대와 아동수당 금액 상향 조정은 상당한 규모의 재정이 수반되고, 특히 개정안별로 지급 금액도 상이한 만큼, 충분한 사회적 협의와 논의 과정을 통해 아동 양육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겠음.

한편, 부모급여를 사실상 폐지하려는 것은 정부 지원의 영아기 편중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아동수당 지급액 인상에 따른 재정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현재 부모급여 외 첫만남이용권이 첫째 자녀에게 200만원, 둘째 이상 자녀에게는 300만원이 지급되고 있고 각 지자체별 출산지원금도 출생 초기에 지급되고 있는바, 개정안에 따를 경우 이러한 편중 지원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한편, 영아기 부모가 체감하는 양육비용에 대한 부담 정도가 약 80%에 이른다는 조사도 있는바, 이와 관련하여

여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아동수당 확대 검토 필요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미애)

개정안의 내용을 일부 채택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고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

6. 찬반토론의 요지

재정과 미래세대 부담을 고려하고,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 여건을 반영하여 국고 보조율 확대 필요 등

7. 심사결과

대안을 제안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